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치과 의료소송 판결문 비교 분석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구강위생학 전공

김 은 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치과 의료소송 판결문 비교 분석

지도교수 이 윤 환

이 논문을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구강위생학 전공

김 은 정

김은정의 보건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 윤 환 인

심 사 위 원 전 기 홍 인

심 사 위 원 허 윤 정 인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년 12월 12일

## 감사의 글

늦은 나이에 시작했던 2년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공과목 학생이 아님에도 지도교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때 흔쾌히 지도를 해주신 이윤환 교수님, 제 논문을 논문답게 이끌어 주셨던 전기홍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 주제를 정하지 못해 힘들어 할 때 새로운 분야에 대해 관심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셨던 허윤정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기초적인 지식도 없던 저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며 언제나 편하게 찾아오라 말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바쁘고 힘든 시간에도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데 도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신 이미진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그만큼 값진 보물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 2년간의 대학원 공부는 앞으로의 제 삶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었고 이 시간 동안 묵묵히 두 아이들을 돌봐주셨던 나의 사랑하는 엄마,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귀한 두 아들 태한, 태의 공부하는 엄마가 좋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준 두 아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대학원 진학에 고민하는 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늘 곁에서 지켜주던 사랑하는 당신에게도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2016년 12월

김은정 올림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치과 의료소송 판결문 비교분석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환자의 권리의식 신장과,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의료의 상업화로 인한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분쟁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전·후 치과 민사소송의 달라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4년간의 치과 의료소송 판결문을 사건발생일 기준으로 2008.4.8. ~ 2012.4.7. 과 2012.4.8. ~ 2016.4.7. 판결문을 재분류하여 제1심 기준으로 총 117건의 판결문을 선정하여 빈도분석 후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1.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건수는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감소 추세로 분석되었다.
2.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해결기간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 1,383일(약 3.8년) 소요되었으며,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 915일(약 2.5년) 소요되었다.
3. 치과 임상영역 과목별 분포현황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구강악안면외과 65건(69.15%)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구강악안면외과 9건(39.13%) 등으로 두 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4.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결과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환자 승소 57건(60.6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환자 기각 15건(65.22%)으로 분석되었다. 조정중재원 이후 최종심 결과 환자 기각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5.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의사패소 주안점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주의의무

위반 25건(43.86%),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설명·주의의무 위반 4건(50.0%) 으로 두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geq .05$ ).

6.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의의무 위반 요인은 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모두 시술 및 수술 전 치료수립 미흡으로 각 각 14건(32.56%), 8건(18.60%) 으로 분석되었다.

7.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설명의무 위반 요인은 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모두 후유증 및 합병증 설명 미흡으로 각 각 20건(80.0%), 4건(80.0%) 으로 분석되었다.

8.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모두 장애 등에서 각 각 40건(70.18%), 4건(50.0%) 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9. 치과 임상영역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값 52,471,418 원,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값 31,944,964원으로 분석되었다.

10. 치과 임상영역 손해배상 결정금액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표준편차 54,582,739원,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표준편차 8,467,203원으로 두 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geq .05$ ).

11. 치과 임상영역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값 5,000,000원,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값 10,000,000원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치과임상영역 의료소송 판결문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조정중재원 전·후 의료소송은 감소함을 보이고 있으나, 유사한 진료과목의 의료분쟁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의료진의 치료 전·후의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판결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향후 의료분쟁 예방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치과 의사단체와, 학계, 정부가 합리적인 노력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대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

핵심어: 치과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소송, 판결문

# 차 례

국문요약 .....	i
차례 .....	iii
그림 차례 .....	vii
표 차례 .....	viii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4
3. 이론적 고찰 .....	5
3-1. 의료사고 .....	5
3-2. 의료분쟁 .....	5
3-2-1. 의료분쟁 조정기관 .....	6
3-3. 의료소송 .....	7
II. 연구 방법 .....	9
1. 연구대상의 설정 .....	9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	10
3. 변수의 정의 .....	13
3-1. 판결문 기본 정보 .....	13
3-2. 의료기관 측 요인 .....	15
3-3. 환자 측 요인 .....	16
4. 자료 분석 방법 .....	18



III. 연구 결과 .....	19
1.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연도와 사건 수 .....	19
2.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1심 기준 연도별 분포 .....	20
3.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해결기간 .....	21
4.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법원별 분포 .....	22
5.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과목별 분포 .....	24
6.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분류 .....	25
7.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결과 .....	26
8.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의사 패소 주안점 .....	27
9.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의의무 위반 요인 분석 .....	28
9-1.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의의무 위반 결과에 따른 세부 분석	29
10.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설명의무 위반 요인 분석 .....	31
11.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결과 분석 .....	32
12.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의사 책임 제한 인정 비율 .....	33
12-1.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요 책임 제한 사유 분포 .....	34
13.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환자승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금액 .....	36
14.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손해배상 결정 금액 .....	37
15.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 .....	38
IV. 고찰 .....	39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	39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	40
V. 결론 .....	46
참고문헌 .....	48



## 그림 차례

그림 1. 민사소송 재판 절차 .....	8
그림 2. 자료수집 과정 .....	12



## 표 차례

표 1. 변수의 정의 .....	17
표 2.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연도와 사건 수 .....	19
표 3.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1심 기준 연도 .....	20
표 4.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해결기간 .....	21
표 5.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법원별 분포 .....	23
표 6.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과목별 분포 .....	24
표 7.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분류 .....	25
표 8.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결과 .....	26
표 9.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의사 패소 주안점 .....	27
표 10.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의의무 위반 요인 분석 .....	28
표 11.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의의무 위반 결과에 따른 세부 분석 .....	30
표 12.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설명의무 위반 요인 분석 .....	31
표 13.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결과 분석 .....	32
표 14.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의사 책임 제한 인정 비율 .....	33
표 15.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요 책임 제한 사유 분포 .....	35
표 16. 손해배상 청구 금액 .....	36
표 16. 손해배상 결정 금액 .....	37
표 17. 손해배상 위자료 .....	38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환자의 주권이 강조되는 법학이론이 발달하고 정보전달매체가 다양화되면서 의료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로인한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 높아지면서 의료공급자와 의료소비자 사이에 의료행위 결과에 대한 평가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7). 나아가 치료 결과가 주관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의료인의 책임을 묻는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의료분쟁의 증가 원인으로는 의료행위의 양적 증가, 의료비 상승, 의료인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상실, 의료진과 환자간의 수평적 평등관계로 인한 환자 권리의식 신장, 의료정보 습득 증가, 또한 의료에 대한 환자의 이해부족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법원 및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의료분쟁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중 치과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전체 981건의 의료피해 접수 중 치과 137건으로 14.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정형외과 153건(15.7%)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조정중재원 치과 의료분쟁 현황 또한 2013년 전체 상담건수 1,398건 중 치과 116건(8.3%)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전체 의료분쟁에서 치과 영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의료영역과는 달리 치과치료는 생사의 문제이기 보다 삶의 질 향상의 문제로 인식되면서다. 치과 치료 시 음식물 섭취 및 저작시 불편 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적인 부분에 대한 심미치료 등으로 인한 자기만족도, 치아손실에 따른 상실감과 치과치료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 및 불안감 등으로 이는 의사의 뚜렷한 과실이 없음에도 환자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인 치료결과에 따른 불만족으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분쟁의 증가로 인해 의사는 환자에 대한 오진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방어적 진료 또는 위축된 진료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응급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야기 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의료분쟁 해결비용,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 등 사회비용의 증가는 환자의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에서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정부의 공식기구로는 한국소비자원과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두 곳에 지나지 않아 상당수의 의료분쟁들이 사적·음성적으로 해결되고 있었다(김재운, 2015). 이에 의료분쟁 증가에 따른 제도적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안한 후 수차례에 걸쳐 논의되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다(최윤애, 2012). 조정중재원 설립 이전 치과의료 민사소송은 2011년 57건에서 2015년 31건으로 상당수 감소함을 보였으며 이에 반해 조정중재원은 설립된 2012년 치과 접수 48건, 2015년도 16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소송이 조정중재원 전·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조정중재원 전·후 4년간의 치과소송 판결문 전수에 대하여 (1) 사고 발생 질환, (2) 사고 발생 의료행위, (3) 사고 발생 의료행위 이외의 발생원인 등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치과소송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권병기, 2006; 조정은, 2013)은 판결문 선정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구득 가능한 일부 판결문들만을 분석에 활용하고 있었고, 특히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치과소송 경향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그 범위 또한 현황분석에 그치고 있어 최근 치과소송 경향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그 범위 또한 현황분석에 그치고 있어 실제 의료분쟁 실태를 반영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정중재원 전·후 4년간의 의료소송 판결문을 분석해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유형화 하여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조정중재원 설립 전·후로 치과 임상영역의 민사소송의 달라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를 통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며 치과 임상에서의 의료소송에 대한 재발방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이론적 고찰

#### 1) 의료사고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 등)이라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의료분쟁조정법」 제2조1항).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당초 의학적인 기대와 달리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 명하였고 넓은 의미로는 '의료인에게 의한 의료과오 이외에 의료기관의 시설하자, 원인불명 등에 의하여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상에 이른 경우, 기타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추호경(1992)은 '의료사고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누구의 잘못이라는 가치가 전혀 내포되지 않고 단지 예기하지 못했던 원치 않은 결과라는 뜻으로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의료사고는 의사의 의료상 과실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임상의학적으로 의료수준을 벗어난 사고 예를 들면, 환자관리상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 의료기구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병원의 시설관리에 하자가 발생하여 일어나는 사고 등도 이에 포함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의료사고의 정의는 '진단과 치료의 과정 중 생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으로 하였다.

#### 2) 의료분쟁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으로(「의료분쟁조정법」 제2조제2항)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 간호사·약제사·물리치료사 등의 과실, 병원관리상의 하자 등을 원인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

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료인·의료기관과 환자간의 다툼이라고 규정하였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김광우(1984)은‘의사의 진료로 인한 진료사고와 의사를 포함한 의료관계자의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를 출발점을 한 의료진과 환자측과의 다툼’이라고 정의하였다. 의료분쟁 조정기관으로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원을 통해 민원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에 대해 조정, 중재를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에 의한 의료소송을 이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가입한 손해보험사,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공제회가 있다(류수생, 2015).

### 2-1) 의료분쟁 조정 기관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정·중재의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하여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의 감정, 손해배상금 대불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과거 조정중재원 설립 이전 의료소송을 주로 관장하던 정부기관은 소비자원과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두 곳이었으나 실제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사례는 극히 적었으며, 보통의 경우 소비자원에 상담을 통한 사건 접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조정중재원 개원 전,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전체 접수 건수는 2012년 1,015건에서 2013년 981건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함을 보이고 있으며,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조정중재원의 상담건수가 2012년 26,831건에서 2013년 36,099건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많은 의료분쟁이 조정중재원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의료소송

의료소송이란 의사의 의료 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 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에 있어 과실이 있느냐의 여부를 다투며 제기되는 소송으로 말한다(김재윤, 2015). 의료소송은 일차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나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여부를 다투는 형사소송과 의료법 위반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된다(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2007). 의료소송으로 인한 민사적 책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의료민사소송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성립 시에 민사상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의료과실 판단에 있어 의료 기술적 과실과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침해라는 2중 잣대로 판결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엄격한 입증책임 원칙하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가 의료행위의 불완전성이나 불법행위를 입증하고 이에 따른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환자로 하여금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의 설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치과 임상영역의 의료민사소송 판결문이다. 치과소송 판결문을 조정중재원 설립을 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 부칙(법률 제10566호, 2011. 4. 7.) 제3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법 시행(2012. 4. 8.)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연구의 자료가 되는 판결문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의료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일인 2012년 4월 8일 전·후 4년간의 판결문을 선정하였다.

## 2.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치과 임상영역에서 발생하는 민사 의료소송에 관한 판결문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판결문 수집 절차는 크게 해당 사건 검색, 판결문 신청, 판결문 확보로 나눌 수 있다. 해당 사건 검색은 대법원 사이트의 ‘판결서 방문 열람제도’<sup>1)</sup> 이용하여 해당 사건번호와 법원 명을 확보하였으며, 판결문 신청은 대법원 사이트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sup>2)</sup> 이용하여 신청하였고, 판결문 확보는 전국 지방법원을 통해 이메일로 전달받았으며, 2015년 1월1일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서는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여<sup>3)</sup> 직접 다운 받을 수 있었다.

수집된 판결문은 총 416건이었으며,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판결문은 제외하였으며,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치과 진료 시 일어나는 의료사고만을 분석하기 위해 치과 임상 의료 사고가 아닌 판결문 71건은 제외하였다. 제외된 71건의 판결문들은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판결문 5건, 양악수술로 성형외과 진료와 혼동된 타과 의료소송 판결문 62건, 2개의 진료과목이 함께 소송된 사건 중 치과는 무혐의로 처리된 판결문 1건, 치과 임상 치료와 상관없이 보험회사와의 치과 보험금 건으로 다투

1)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는 법원의 종합법률정보시스템과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직접 검색 및 열람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란?

Available from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trialeodes/overview/index.html>)

2)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제도는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란?

Available from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trialrecord\\_offer/overview/index.html](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trialrecord_offer/overview/index.html))

3)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다.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된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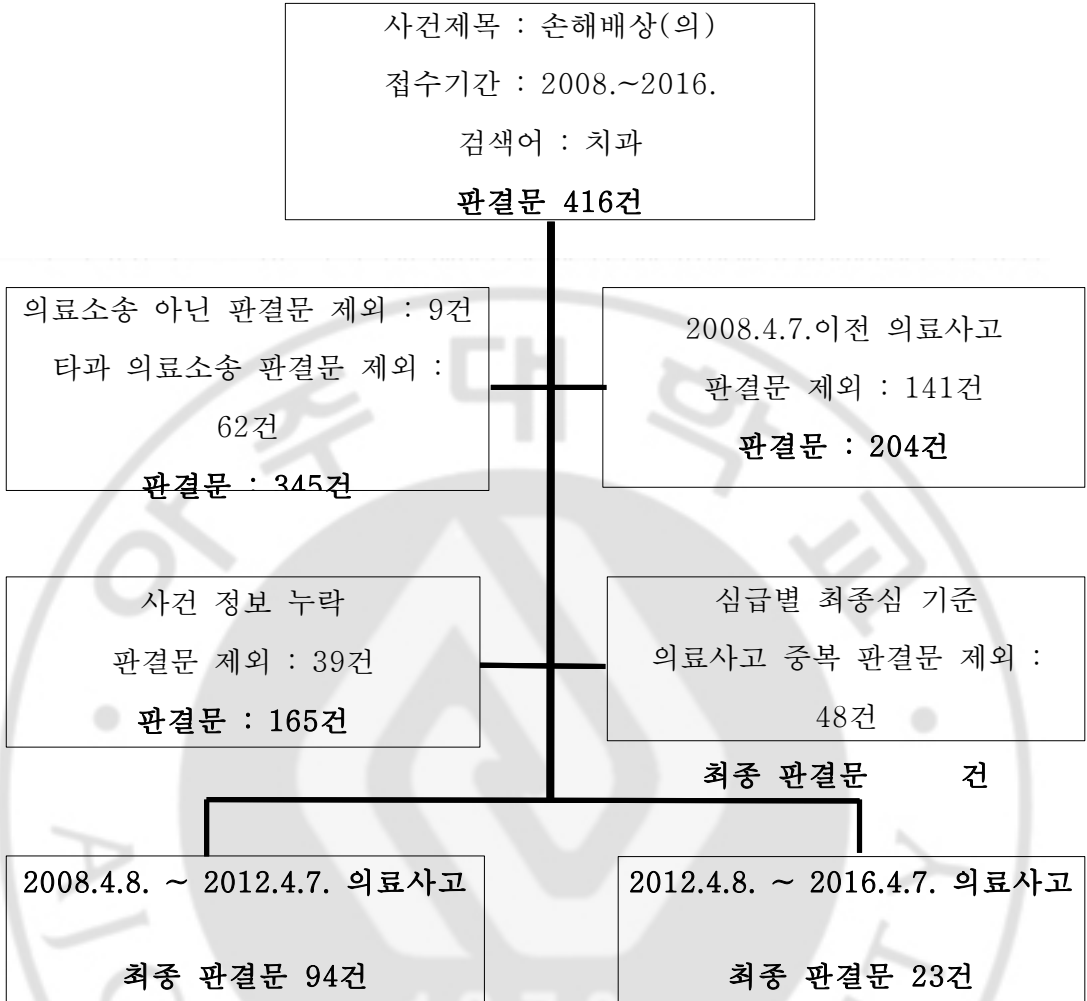
(출처: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Available from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guide/index.html>)

는 판결문 2건, 소멸시효 관련 판결문 1건으로 본 연구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도 분석에 필요한 사건개요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39건의 판결문 또한 제외하였다. 39건의 판결문들은 의료사고 내용과 사건 발생일을 알 수 없는 소액사건 판결문 20건, 의료 사고 발생일을 알 수 없는 판결문 7건, 의료 사고 내용을 알 수 없는 판결문 12건이었다. 또한 조정중재원의 설립을 기준으로 전·후를 분석하려고 하였기에 2008년 4월 7일 이전의 치과 임상 의료 사고가 발생한 판결문 141건은 제외하여, 총 165건의 판결문 중 최종심을 기준으로 사건이 중복되는 판결문 48건을 제외한 최종 117건의 판결문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그림 2].





[그림 2] 자료수집 과정



### 3. 변수의 정의

계량적 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및 판례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기준을 참고하여 변수를 선정하였다(이동엽, 2014). 판결문에 기록된 기본정보인 의료사고 발생일, 의료소송 시작연도, 법원 명, 심급, 의료소송 결과, 의료과오 분류와 그에 따른 주의·설명·무위반 종류, 책임 제한 유, 책임제한 사유,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배상 결정금액, 위자료로 분류하였으며, 의료인 측 요인으로는 진료과목, 사고원인 의료행위로 분류하였으며, 환자 측 요인에서는 사고결과로 분류하였다. 분석 변수는 다음과 같다[표 1].

#### 3-1. 판결문 기본 정보

##### 1) 의료사고 발생일

판결문에 기재된 의료사고 발생일(년도-월-일 작성)을 말한다.

##### 2) 의료소송 종결일

최종심의 판결이 선고된 날짜(년도-월-일 작성)을 말한다.

##### 3) 소송 시작 연도

제1심의 사건번호를 참고하여 제1심이 시작된 년도를 분류하였다.

##### 4) 법원 명

최종심 판결이 선고된 법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 5) 최종 판결심

제1심, 항고심<sup>4)</sup> 및 항소심<sup>5)</sup>, 상고심<sup>6)</sup>, 파기 환송심으로 분류하였다.

6) 의료소송 결과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 전부승소, 원고 일부승소, 원고 패소(기각), 기타로 분류 하였다.

7) 의료과오 분류

판결문에 제시된 의료기관(의료인)측의 ① 주의의무 위반, ② 설명의무 위반, ③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모두 위반, ④ 전원의무 위반, ⑤ 주의의무와 전원의무 모두 위반, ⑥ 위반사항 없음, ⑦ 기타로 분류하였다.

8) 주의의무 위반 종류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① 발치 시 부주의, ② 마취 시 부주의, ③ 치아 파절, ④ 임플란트 식립 시 부주의, ⑤ 시술 및 수술 전 치료 계획 수립 미흡, ⑥ 시술 및 수술 후 경과 관찰 미흡, ⑦ 기타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9) 설명의무 위반 종류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을 ① 치료 후 후유증·합병증 설명 미흡, ② 주의사항 설명 미흡, ③ 장애 설명 미흡, ④ 기타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10) 책임제한율

원고 승소의 판결문에 제시된 피고 측 책임제한 인정 범위를 제시하였다.

11) 책임제한 사유

판결문에 제시된 쟁점이 되는 문제를 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환자의 특성, 의료진 노력, 치료의 난이도, 통상적 결과, 치료방법 선택, 기타로 분류하였다.

4) 제1심 결정 및 명령에 관한 불복을 말함.

5)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말함.

6) 항소심에 대한 불복을 말함.

12) 손해배상 청구 금액

의료소송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최대 금액을 말한다.

13) 손해배상 결정 금액

법원에서 선고한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위자료

손해배상 결정 금액 중 위자료만을 말한다.

3-2. 의료기관 측 요인

1) 진료과목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진료과목은 ① 구강악안면외과, ② 치과보철과, ③ 치과교정과, ④ 소아치과, ⑤ 치주과, ⑥ 치과 보존과, ⑦ 구강내과, ⑧ 영상치의학과, ⑨ 구강병리과, ⑩ 예방치과로 분류하였다.

2) 사고 원인 의료행위

원고 측이 주장한 사고 원인 의료행위를 작성하였다.

### 3-3. 환자 측 요인

#### 1) 사고 결과

의료사고로 인한 악결과를 말하며, ① 사망, ② 장애, ③ 합병증(후유증), ④ 치료 미흡, ⑤ 기타로 분류하였다.



[표 1] 변수의 정의

분석 변수	변수 내용
의료사고 발생일	의료사고 발생일 (년도-월-일 작성)
의료소송 종결일	소송 종결일 (년도-월-일 작성)
소송 시작 연도	제1심 사건번호 참고하여 제1심이 시작된 년도 작성
법원명	최종심 판결이 선고된 법원명 작성
최종 판결심	① 제1심 ② 항고심 및 항소심 ③ 상고심 ④ 파기 환송심
의료소송 결과	① 원고 전부 승소 ② 원고 일부 승소 ③ 패소(기각) ④ 기타
의료과오 분류	① 주의의무 위반 ② 설명의무 위반 ③ 주의의무과 설명의무 모두 위반 ④ 전원의무 위반 ⑤ 주의의무와 전원의무 모두 위반 ⑥ 위반 사항 없음 ⑦ 기타
판결문 기본 정보	① 발치 시 부주의 ② 마취 시 부주의 ③ 치아 파절 ④ 임플란트 식립 시 부주의 ⑤ 시술 및 수술 전 치료 계획 수립 미흡 ⑥ 시술 및 수술 후 경과 관찰 미흡 ⑦ 기타
주의의무 위반	① 치료 후 후유증·합병증 설명 미흡 ② 주의사항 설명 미흡 ③ 장애 설명 미흡 ④ 기타
설명 의무 위반	① 치료 후 후유증·합병증 설명 미흡 ② 주의사항 설명 미흡 ③ 장애 설명 미흡 ④ 기타
책임제한율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책임 제한 율(%)
책임제한 사유	① 환자의 특성 ② 의료진 노력 ③ 치료의 난이도 ④ 통상적 결과 ⑤ 치료 방법 선택 ⑥ 기타
손해배상 청구 금액	의료소송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최대 금액을 기재

	손해배상 결정 금액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기재
	위자료	손해배상 결정 금액 중 위자료만 기재
의료 기관 측	진료과목	① 구강악안면외과
		② 치과보철과
		③ 치과교정과
		④ 소아치과
		⑤ 치주과
		⑥ 치과보존과
		⑦ 구강내과
		⑧ 영상치의학과
		⑨ 구강병리과
		⑩ 예방치과
	사고 원인 의료행위	원고측이 주장한 사고 원인 의료행위
환자 측	사고 결과	① 사망
		② 장애
		③ 합병증(후유증)
		④ 치료 미흡
		⑤ 기타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조정중재원 설립일(2012. 4. 8.)을 기점으로 조정중재원 설립 전·후 4년간의 판결문을 통해 변수에 따른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SAS9.2, chi-square test, 독립표본 t-te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연도와 사건 수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시점 2008.4.8. ~ 2012.4.7. 기간의 판결문 94건을 분석한 결과 2008년 12건(12.8%), 2009년 21건(22.3%), 2010년 24건(25.5%), 2011년 29건(30.9%), 2012년 4월 7일 8건(8.5%)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판결문 23건을 분석한 결과 2012년 4월 8일부터 그해 12월 31일 14건(60.9%), 2013년 6건(26.1%), 2014년 3건(13%)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2].

[표 2]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연도와 사건 수

2008.4.8. ~ 2012.4.7.			2012.4.8. ~2016.4.7.		
연도	사건수	비율(%)	연도	사건수	비율(%)
2008	12	12.8%	2012	14	60.9%
2009	21	22.3%	2013	6	26.1%
2010	24	25.5%	2014	3	13.0%
2011	29	30.9%	2015	0	0
2012	8	8.5%	2016	0	0
total	94	100%	total	23	100%

## 2.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1심 기준 연도별 분포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의 연도별 분석은 1심을 기준으로 2008.4.8. ~ 2012.4.7. 기간의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판결문 94건 중 1심 기준으로 소송을 시작한 연도를 분석한 결과 2009년 4건(4.26%), 2010년 13건(13.83%), 2011년 15건(15.96%), 2012년 15건(15.96%), 2013년 30건(31.91%), 2014년 11건(11.7%), 2015년 5건(5.32%), 2016년 1건(1.06%)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판결문 23건 중 1심 기준으로 소송을 시작한 연도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건(4.35%), 2013년 12건(52.17%), 2014년 7건(30.43%), 2015년 2건(8.7%), 2016년 1건(4.35%)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3].

[표 3]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1심 기준 연도

1심 기준 소송연도	2008.4.8. ~ 2012.4.7.		2012.4.8. ~ 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2008	0	0	0	0
2009	4	4.26%	0	0
2010	13	13.83%	0	0
2011	15	15.96%	0	0
2012	15	15.96%	1	4.35%
2013	30	31.91%	12	52.17%
2014	11	11.7%	7	30.43%
2015	5	5.32%	2	8.7%
2016	1	1.06%	1	4.35%
합계	94	100%	23	100%



### 3.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해결기간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시점 2008.4.8. ~ 2012.4.7. 기간의 판결문 94건 중 사건발생 일을 알 수 없는 판결문 1건의 판례를 제외한 93건의 평균 의료사고 해결 기간은 1,383일로 약 3.8년가량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판결문 23건 중 사건발생 일을 알 수 없는 판결문 1건의 판례를 제외한 22건의 평균 의료사고 해결 기간은 915일로 약 2.5년가량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표 4]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해결기간

2008.4.8. ~ 2012.4.7		2012.4.8. ~ 2016.4.7	
구분	해결기간	구분	해결기간
최대(일)	2,290	최대(일)	1,401
최소(일)	348	최소(일)	396
평균(일)	1,383	평균(일)	915
표준편차	542	표준편차	249

#### 4.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법원별 분포

치과 임상영역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요양기관 지역은 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는 의료소송을 신청한 법원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2008.4.8. ~ 2012.4.7. 기간의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판결문 94건 중 지역 법원별 분석 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30건(31.91%), 서울서부지방법원 4건(4.25%), 서울남부지방법원 5건(5.32%), 서울북부지방법원 5건(5.32%), 서울동부지방법원 3건(3.20%), 부산지방법원 5건(5.32%), 대구지방법원 3건(3.20%), 수원지방법원 5건(5.32%), 전주지방법원 4건(4.25%), 울산지방법원 5건(5.32%), 대전지방법원 5건(5.32%), 광주지방법원 1건(1.06%), 청주지방법원 2건(2.13%), 창원지방법원 2건(2.13%), 춘천지방법원 1건(1.06%), 인천지방법원 4건(4.25%), 서울고등법원 3건(3.19%), 대법원 7건(7.45%)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판결문 23건 중 1심 기준으로 지역 법원별 분석 결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8건(34.78%), 서울서부지방법원 1건(4.35%), 서울북부지방법원 1건(4.35%), 서울 동부지방법원 1건(4.35%), 부산지방법원 4건(17.39%), 대구지방법원 1건(4.35%), 수원지방법원 1건(4.35%), 전주지방법원 1건(4.35%), 울산지방법원 1건(4.35%), 대전지방법원 1건(4.35%), 광주지방법원 1건(4.35%), 서울고등법원 1건(4.35%), 대법원 1건(4.35%)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5].

[표 5]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법원별 분포

법원명	2008.4.8.~2012.4.7		2012.4.8.~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서울중앙지법	30	31.91%	8	34.78%
서울서부지법	4	4.25%	1	4.35%
서울남부지법	5	5.32%	0	0
서울북부지법	5	5.32%	1	4.35%
서울동부지법	3	3.20%	1	4.35%
부산지방법원	5	5.32%	4	17.39%
대구지방법원	3	3.20%	1	4.35%
수원지방법원	5	5.32%	1	4.35%
전주지방법원	4	4.25%	1	4.35%
울산지방법원	5	5.32%	1	4.35%
대전지방법원	5	5.32%	1	4.35%
광주지방법원	1	1.06%	1	4.35%
청주지방법원	2	2.13%	0	0
창원지방법원	2	2.13%	0	0
춘천지방법원	1	1.06%	0	0
인천지방법원	4	4.25%	0	0
서울고등법원	3	3.19%	1	4.35%
대법원	7	7.45%	1	4.35%
합계	94	100%	23	100%

## 5.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과목별 분포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시점 2008.4.8. ~ 2012.4.7. 기간의 의료사고 과목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 94건 중 구강악안면외과 65건(69.15%), 치과보철과 15건(15.96%), 치과보존과 8건(8.51%), 치주과 1건(1.06%), 치과교정과 5건(5.32%)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의료사고 과목을 분석한 결과 판결문 23건 중 구강악안면외과 9건 (39.13%), 치과보철과 6건(26.09%), 치과보존과 4건(17.39%), 치주과 3건(13.04%), 소아치과 1건(4.35%)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기간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한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표 6].

[표 6]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과목별 분포

진료과목	2008.4.8. ~ 2012.4.7.		2012.4.8. ~ 2016.4.7.		x <sup>2</sup>	p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구강악안면외과	65	69.15%	9	39.13%	24.47	< .001
치과보철과	15	15.96%	6	26.09%		
치과보존과	8	8.51%	4	17.39%		
치주과	1	1.06%	3	13.04%		
치과교정과	5	5.32%	0	0		
소아치과	0	0	1	4.35%		
합계	94	100%	23	100%		

## 6.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분류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2008.4.8. ~2012.4.7. 기간의 의료사고 판결문 94건 중 제1심 종결 66건(71.3%), 항고심 및 항소심 종결 20건(20.2%), 상고심 종결 7건(7.4%), 타 기관 중심 판결문 1건(1.1%)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2016.4.7. 기간의 의료사고 판결문 23건 중 제1심 종결 16건(69.6%), 항고심 및 항소심 종결 5건(21.7%), 상고심 종결 1건(4.35%), 타 기관 중심 판결문 1건(4.35%)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7].

[표 7]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분류

법원명	2008.4.8. ~2012.4.7		2012.4.8. ~2016.4.7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제1심 종결	66	71.3%	16	69.6%
항고심 및 항소심 종결	20	20.2%	5	21.7%
상고심 종결	7	7.4%	1	4.35%
타 기관 중심	1	1.1%	1	4.35%
합계	94	100%	23	100%

## 7.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결과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2008.4.8.~2012.4.7 기간의 판결문 94건 중 최종심 판결의 소송 결과는 환자 승소 57건(60.64%), 환자 기각 37건(39.36%)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결과 2012.4.8.~2016.4.7 기간의 판결문 23건 중 최종심 판결의 소송 결과는 환자 승소 8건(34.78%), 환자 기각 15건(65.22%)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8].

[표 8]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결과

소송결과	2008.4.8~2012.4.7		2012.4.8~2016.4.7	
	건수	백분율(%)	건수	백분율(%)
환자 승소	57	60.64%	8	34.78%
환자 기각	37	39.36%	15	65.22%
합계	94	100%	23	100%

## 8.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의사 패소 주안점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시점 2008.4.8. ~ 2012.4.7. 기간의 의사 패소 판결문 57건 중 주의의무 위반 25건(43.86%), 설명의무 위반 11건(19.3%), 설명·주의의무 위반 14건(24.56%), 전원조치·주의의무 위반 4건(7.02%), 무변론 2건(3.51%), 기타 1건(1.75%)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의사 패소 판결문 8건 중 주의의무 위반 2건(25.0%), 설명의무 위반 1건(12.5%), 설명·주의의무 위반 4건(50.0%), 무변론 1건(12.5%)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기간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한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geq .05$ )[표 9].

[표 9]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의사 패소 주안점

의사 패소 주안점	2008.4.8~2012.4.7		2012.4.8~2016.4.7		x <sup>2</sup>	p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주의의무 위반	25	43.86%	2	25.0%	4.35	.501
설명·주의의무 위반	11	19.3%	1	12.5%		
설명·주의의무 위반	14	24.56%	4	50.0%		
전원·주의의무 위반	4	7.02%	0	0		
무변론	2	3.51%	1	12.5%		
기타	1	1.75%	0	0		
합계	57	100%	8	100%		

## 9.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의의무 위반 요인 분석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시점 2008.4.8. ~ 2012.4.7. 기간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결문 43건 중 발치 시 부주의 3건(6.98%), 마취 시 부주의 3건(6.98%), 치아 파절 3건(6.98%), 임플란트 식립 시 부주의 4건(9.30%), 시술 및 수술 전 치료수립 미흡 14건(32.56%), 시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 미흡 8건(18.60%), 기타 8건(18.60%)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주의의무 위반 판결문 6건 중 임플란트 식립 시 부주의 2건(33.33%), 시술 및 수술 전 치료수립 미흡 2건(33.33%), 기타 2건(33.33%)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10].

[표 10]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의의무 위반 요인 분석

주의의무 위반 내용	2008.4.8~2012.4.7		2012.4.8~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발치 시 부주의	3	6.98%	0	0
마취 시 부주의	3	6.98%	0	0
치아 파절	3	6.98%	0	0
임플란트 식립 시 부주의	4	9.30%	2	33.33%
시술 및 수술 전 치료수립 미흡	14	32.56%	2	33.33%
시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 미흡	8	18.60%	0	0
기타	8	18.60%	2	33.33%
합계	43	100%	6	99.99% (±0.01)



## 9-1.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의의무 위반 결과에 따른 세부 분석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판결문 주의의무위반 결과에 따른 세부 분석을 6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08.4.8. ~ 2012.4.7. 기간의 판결문 43건 중 '발치 시 부주의' 3건(6.98%) 에서는 파절 치근 제거로 신경손상, 발치 시 기구조작 미숙으로 잇몸손상 등이 포함되었으며, '마취 시 부주의' 3건(6.98%) 에서는 발치와 임플란트 마취로 인한 신경손상이 포함되었고, '치아파절' 3건(96.98%) 에서는 post 드릴링 과정 중 치아 파절, 교정 wire 제거 중 치아 파절, 보철물 제거 중 치아 파절 등이 포함되었으며, '임플란트 식립 시 부주의' 4건(9.30%) 에서는 계약과 다른 임플란트 식립, 치아 파절된 채 임플란트 식립, 시술 상 과실 등이 포함되었으며, '시술 및 수술 전 치료수립 미흡' 14건(32.56%) 에서는 의학적 상식 범위 벗어난 치료방법, X-ray 판독 부주의, 하치조신경관 위치 파악 미흡, 치료계획 수립 미흡 등이 포함되었으며, '시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 미흡' 8건(18.60%) 에서는 임플란트 수술 후 상악동 염, 보철 후 부정교합 원인, 절개와 배농 경과관찰 미흡 뇌기능저하, 양악수술 후 경과관찰 미흡 신경손상, 후속조치 미흡으로 사망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타' 8건(18.60%) 에서는 기구파절, 양악수술시 시술 상 과실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판결문 6건 중 '임플란트 식립 시 부주의' 2건(33.33%), '시술 및 수술 전 치료수립 미흡' 2건(33.33%), 기타 2건(33.33%)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11].

[표 11]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의의무 위반 결과에 따른 세부 분석

주의의무	주의의무위반 세부 요인	~2012.4. 7	~2016.4. 7
발치 시 부주의	파절 치근 제거로 신경손상	3	0
	발치 시 기구 조작 미숙으로 잇몸손상	(6.98%)	
마취 시 부주의	발치 시 마취로 인한 신경손상	3	0
	임플란트 시 마취로 인한 신경손상	(6.98%)	
치아 파절	post 드릴링 과정 중 치아 파절	3	0
	교정 wire 제거 중 치아 파절	(6.98%)	
	보철물 제거 중 치아 파절		
임플란트 식립 시 부주의	계약과 다른 임플란트 식립	4	2
	치아 파절된 채 임플란트 식립	(9.30%)	(33.33%)
	시술 상 과실		
시술 및 수술 전 치료수립 미흡	의학적 상식 범위 벗어난 치료방법		
	X-ray 판독 부주의	14	2
	하치조신경관 위치 파악 미흡	(32.56%)	(33.33%)
시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 미흡	치료계획 수립 미흡		
	임플란트 수술 후 상악동 염		
	보철 후 부정교합 원인	8	0
기타	절개와 배농 경과관찰 미흡 뇌기능저하	(18.60%)	
	양악수술 후 경과관찰 미흡 신경손상		
	후속조치 미흡으로 사망		
합계	기구파절	8	2
	양악수술 시술 상 과실	(18.60%)	(33.33%)
		43(100%)	6(100%)

## 10.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설명의무 위반 요인 분석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시점 2008.4.8. ~ 2012.4.7. 기간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결문 25건 중 후유증·합병증 설명 부족 20건(80.0%), 주의사항 설명 부족 2건(8.0%), 장애 설명 부족 3건(12.0%)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설명의무 위반 판결문 5건 중 후유증·합병증 설명 부족 4건(80%), 주의사항 설명 부족 1건(20%)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12].

[표 12]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설명의무 위반 요인 분석

설명 의무 위반 내용	2008.4.8~2012.4.7		2012.4.8~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후유증·합병증 설명 미흡	20	80.0%	4	80.0%
주의사항 설명 미흡	2	8.0%	1	20.0%
장애 설명 미흡	3	12.0%	0	0
합계	25	100%	5	100%

## 11.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결과 분석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시점 2008.4.8. ~ 2012.4.7. 기간의 의료사고 결과 분석에 대한 판결문 57건 중 사망 2건(3.50%), 합병증 5건(8.77%), 장애 40건(70.18%), 치료 미흡 7건(12.29%), 기타 무변론 3건(5.26%)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2016.4.7. 기간의 의료사고 결과 분석에 대한 판결문 8건 중 합병증 1건(12.5%), 장애 4건(50.0%), 치료 미흡 2건(25.0%), 기타 무변론 1건(12.5%)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13].

[표 13]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결과 분석

의료사고 결과	2008.4.8~2012.4.7		2012.4.8~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사망	2	3.50%	0	0
합병증	5	8.77%	1	12.5%
장애	40	70.18%	4	50.0%
치료 미흡	7	12.29%	2	25.0%
기타(무변론 포함)	3	5.26%	1	12.5%
합계	57	100%	8	100%

## 12.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의사 책임제한 인정 비율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시점 2008.4.8. ~ 2012.4.7. 기간의 환자 승소 판결문 57건 중 의사 책임제한 인정 비율이 판시된 35건의 판결문 중 의사 책임 제한 인정비율 70% 11건(31.43%), 80% 8건(22.86%), 50% 6건(17.14%)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환자 승소 판결문 8건 중 의사 책임제한 인정 비율이 판시된 2건의 판결문 중 의사책임 인정비율 70% 1건(50%), 90% 1건(50%) 등으로 분석 되었다[표 14].

[표 14]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의사 책임제한 인정 비율

구분	2008.4.8~2012.4.7		2012.4.8~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10%	0	0	0	0
20%	0	0	0	0
30%	3	8.57%	0	0
40%	1	2.86%	0	0
50%	6	17.14%	0	0
60%	4	11.43%	0	0
70%	11	31.43%	1	50.0%
80%	8	22.86%	0	0
90%	2	5.71%	1	50.0%
100%	0	0	0	0
합계	35	100%	2	100%

## 12-1.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요 책임 제한 사유 분포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판결문 중 책임 제한 을 인정에 따른 판결문을 통해 의료사고의 주요 책임 제한 사유를 6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08.4.8. ~ 2012.4.7. 기간의 판결문 35건 중 ‘환자의 특성’11건(31.43%) 에서는 환자의 움직임, 환자의 직업적·연령·체질적 특성,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치료가 지연된 것, 환자의 악화된 구강상태 등이 포함되었으며, ‘의료진 노력’5건(14.28%) 에서는 환자에게 좋은 치료법을 선택한 것, 의료진의 노력 등이 포함되었으며, ‘치료의 난이도’15건(42.86%) 에서는 구강의 해부학적 구조 다양, 임플란트 길이·방향 미세차이, 하악관 위치 예측 어려움, 불가피한 손상·압박 등이 포함되었으며, 통상적인 치료 결과 1건(2.86%), 의료진의 잘못된 치료 방법 선택 1건(2.86%) 등이 있었으며, 그 외 기타 2건(5.71%) 에는 타병원에서 생긴 부작용을 치료하다 생긴 의료사고와, 환자 스스로가 아직 면허 취득하지 않은 치과대학 학생에게 치료를 맡긴 내용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판결문 2건 모두 치료의 난이도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15].

[표 15]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요 책임 제한 사유 분포

책임사유	책임 제한 사유	~2012.4.7	~2016.4.7
		건수 (%)	건수 (%)
	환자 움직임		
환자의 특성	환자 직업적, 연령, 체질적 특성 환자 내원하지 않아 치료지연	11 (31.43%)	0
의료진 노력	환자의 악화된 구강 상태 환자에게 좋은 치료방법 의료진의 노력(의료진 노력)	5 (14.28%)	0
치료의 난이도	해부학적 구조 다양 임플란트 길이, 방향 미세차이 하악관 위치 예측 어려움 불가피한 손상, 압박	15 (42.86%)	2 (100%)
통상적결과	통상적으로 발생 가능	1 (2.86%)	0
치료선택	부작용 높은 치료 방법 선택	1 (2.86%)	0
기타	타 병원 부작용 제거 의사 면허 없는 이에게 치료	2 (5.71%)	0
합계		35 (100%)	2 (100%)

### 13.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환자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금액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시점 2008.4.8. ~ 2012.4.7. 기간의 환자 승소에 따른 청구취지상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한 57건의 판결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최대값 1,053,878,150원<sup>7)</sup>, 최소값 5,300,000원<sup>8)</sup>, 평균값 52,471,418원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환자 승소에 따른 청구취지상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한 8건의 판결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최대값 66,869,878원<sup>9)</sup>, 최소값 10,000,000원<sup>10)</sup>, 평균값 31,944,964원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16].

[표 16] 손해배상 청구금액

2008.4.8~2012.4.7		2012.4.8~2016.4.7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최대값	1,053,878,150	최대값	66,869,878
최소값	5,300,000	최소값	10,000,000
평균값	52,471,418	평균값	31,944,964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4.판결 2011가합96951 양측 악관절 성형술

8) 부산지방법원 2012.11.16.판결 2012나3415 보철post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8.판결 2013가단13521 자가골 이식술

1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8.6.판결 2014가단52273 근관치료



#### 14.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손해배상 결정 금액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시점 2008.4.8. ~ 2012.4.7. 기간의 환자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 결정 금액이 인정된 57건의 판결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 결정 금액의 최대값 331,049,357원<sup>11)</sup>, 최소값 500,000원<sup>12)</sup>, 평균값 32,887,976원, 표준편차 54,582,739원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환자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 결정 금액이 인정된 8건의 판결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 결정 금액의 최대값 26,050,000원<sup>13)</sup>, 최소값 2,500,000원<sup>14)</sup>, 평균값 13,700,009원, 표준편차 8,467,203원 등으로 분석되었다. 두 기간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한 결과,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geq .05$ )[표 17].

[표 17] 손해배상 결정 금액

2008.4.8~2012.4.7		2012.4.8~2016.4.7		t	p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최대값	331,049,357	최대값	26,050,000	0.99	.328
최소값	500,000	최소값	2,500,000		
평균값	32,887,976	평균값	13,700,009		
표준편차	54,582,739	표준편차	8,467,20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4.판결 2011가합96951 양측 악관절 성형술

12) 울산지방법원 2016.4.1.판결 2015가단9201 임플란트 식립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7.20.판결 2016가단19869 보철,임플란트 교합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11.판결 2014가단5254862 발치

## 15.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피고의 책임비율, 기타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한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시점 2008.4.8. ~ 2012.4.7. 기간의 환자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이 인정된 54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 위자료 최대값 72,000,000원<sup>15)</sup>, 최소값 500,000원<sup>16)</sup>, 평균값 5,000,000원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2012.4.8. ~ 2016.4.7. 기간의 환자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이 인정된 7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손해배상 위자료의 최대값 10,000,000원<sup>17)</sup>, 최소값 2,500,000원<sup>18)</sup>, 평균값 10,000,000원 등으로 분석되었다[표 18].

[표 18] 손해배상 위자료

2008.4.8~2012.4.7		2012.4.8~2016.4.7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최대값	72,000,000	최대값	10,000,000
최소값	500,000	최소값	2,500,000
평균값	5,000,000	평균값	10,000,00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14.판결 2011가합96951 양측 악관절 성형술

16) 울산지방법원 2016.4.1.판결 2015가단9201 임플란트 식립

17) 부산지방법원 2014.7.2.판결 2013가합44273 임플란트 식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5.판결 2013가단5100814 임플란트 식립

광주지방법원 2016.6.9.판결 2015가단502133 임플란트 식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7.20.판결 2016가단19869 보철, 임플란트 교합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6.11.판결 2014가단5254862 발치

## IV. 고찰

### 1. 연구 방법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치과 의료소송 현황 파악을 위해 2008.4.8. ~ 2016.4.7. 기간의 의료사고 발생 건 중 판결이 확정된 판결문 117례를 제공 받았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료소송 판결문에 대해서는 제공 받을 수 없었기에 본 연구 결과에 한계점이 있다. 의료분쟁이 모두 의료소송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본 연구의 판결문 분석이 현재 발생하는 치과 의료분쟁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117건의 판례분석을 통해 치과 임상영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향과 발생 원인에 대한 대략적 판단은 가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기에 사건발생 흐름이나 과오 여부에 대해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 2.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 발생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을 제기하는 환자들의 요인을 살펴보면 의사의 무성의한 태도, 불충분한 설명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이는 사소한 감정 대립이 분쟁이 되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의료소송은 의학상, 법률상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 상 처치나 병원의 인적, 물적 관리 또는 의료전달체계 등 모든 의료과정에서 과실의 여부를 타하면 제기 되는 소송이다(김재운, 2015).

이에 본 연구는 치과 임상영역에서 발생한 의료소송 117건의 판례분석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연도와 사건 수를 살펴보면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2011년도 29건(30.9%) 등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2013년 6건(26.1%) 등으로 감소함으로 분석되었다. 조정은(2013)은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이 2005년 ~ 2011년 증가 추세라고 보고한 바 있다.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의료사고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실히 감소함을 보이고 있으나, 본 연구는 확정된 판결문만을 제공받아 분석하였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해결기간을 의료사고 발생 시점부터 최종심 판결까지 분석한 결과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 1,383일로 약 3.8년 소요되었으며,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 915일로 약 2.5년 소요됨으로 분석되었다. 의료분쟁은 의료법으로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법원으로서도 고도의 전문가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에 법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른 특별한 접근이 요구되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소송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진료과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구강악안면외과 65건(69.15%),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구강악안면외과 9건(39.13%)으로 진료과목 중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두 기간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류수생(2014) 또한 치과 임상영역에서 외과수술이 많은 구강악안면외과와 보철과, 임플란트 순으로 의료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의료소송의 진료과목별 편중을 보면 평균수명 연장과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과거 보존적인 치료에서 이제는 외과적 수술과 보철치료를 많이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분류를 보면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판결문 94건 중 1심 종결 66건(71.3%),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판결문 23건 중 1심 종결 16건(69.6%) 등으로 모두 1심에서 의료소송을 종결하는 판결문이 많았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결과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판결문 94건 중 환자 승소 57건(60.64%), 환자 기각 37건(39.36%),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판결문 23건 중 환자 승소 8건(34.78%), 환자 기각 15건(65.22%) 등으로 분석되었다.

치과 임상영역의 의사 패소 주안점을 살펴보면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주의의무 위반 25건(43.86%), 설명·주의의무 위반 14건(24.56%),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설명·주의의무 위반 4건(50.0%) 등으로 분석되었다. 의료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가 당부되며,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의사의 설명의무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의의무 위반 요인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시술 및 수술 전 치료수립 미흡 14건(32.56%), 시술 및 수술 후 경과관찰 미흡 8건(18.60%) 등으로 분석되었고,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또한 시술 및 수술 전 치료수립 미흡 2건(33.33%)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이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문진을 통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의료진의 역량강화를 통해 환자의 이상증상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설명의무 위반 요인은 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모두 후유증 및 합병증 설명 미흡이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헌법」 제2장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의 법령에서 제시한 개인의 인격적 권리인 행복추구권은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보장을 의미하므로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소송 판결에 많은 영향을 끼치리라 사료된다. 김선중(2014)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진료의 필요성, 진료방법, 진료에 따르는 위험, 예후 등을 설명하는 것이 설명의무라고 하였다. 설명의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 및 수술을 선택할 경우 발생가능한 부작용과 치료방법에 따른 위험성을 비교·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환자 측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조정중재원 전·후 모두 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주의의무에서 분석한 것 같이 치료 계획 미흡과 경과관찰 미흡으로 발생한 치료의 악결과로 분석되었다. 조정중재원의 치과 의료분쟁 사고내용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증상악화 > 신경손상 > 감각이상 순으로 보고되었으며, 권병기(2006)은 치료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한 치과 의료소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요 책임제한 사유 분포를 살펴보면 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모두 ‘치료의 난이도’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분 분석 결과 임플란트 길이·방향 미세차이로 인한 난이도, 하악관 위치 예측 어려움, 치료상 불가피한 손상·압박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환자의 특성’에 따른 사유도 그 뒤를 이었다. 환자의 특성에 따른 세부 분석 결과 치료 중 환자의 움직임, 환자 직업적·연령·체질적 특성,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치료가 지연된 사례 환자의 악화된 구강 상태 등으로 분석되었다. 통상의 경우 병변은 정형적이거나 또는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지만 치과 임상영역에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확정적 진단을 하기가 어려워 의료진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가정적·잠정적 판단에 입각하여 진료에 임하므로 의료사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음성적 해결보다는 사고의 원인을 찾아 진실규명위한

노력이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값 52,471,418원으로 구강악안면외과 양측 악관절 성형 수술에서 가장 높은 최대값 1,053,878,150원을 청구 하였으며, 보철과 치료 중 포스트 치료에서 최소값 5,300,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값 31,944,964원으로 구강악안면외과 자가골 이식 수술에서 최대값 66,869,878원을 청구 하였으며, 보존과 근관치료에서 최소값 10,000,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손해배상 결정금액은 조정중재원 전·후 두 기간의 차이를 확인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분석되었으며( $p \geq .05$ ), 이는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판결금액 표준편차 54,582,739원,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판결금액 표준편차 8,467,203원 등으로 분석되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7.7.26. 선고 2005다64774판결)라고 판시하였으며, 이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신현호, 백경희, 2011).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손해배상 위자료를 살펴보면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위자료 평균값 5,000,000원으로 구강외과 양측 악관절 성형수술 시 주의·설명 의무 위반으로 최대값 72,000,000원, 구강외과 임플란트 식립 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최소값 500,000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위자료 평균값 10,000,000원으로 구강외과 임플란트 식립 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최대값 10,000,000원, 구강외과 발치 시 주의·설명 의무 위반으로 최소값 2,500,000원으로 분석되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례는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11건, 개원 이후 1건으로 의료진의 설명에 대해 중요시 하고 있으며, 진료 중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형식으로 보상되고 있음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판결문 분석결과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소송건수가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대한 과실과 상해, 장애가 많은 내과, 정형외과 분야와 다르게 치과는 경미한 사고로 조정중재원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정중재법이 개정되었어도 치과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경미한 사고로 발생하는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치과치료에 있어 사소한 불신과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치료 과정 설명과 치료 후의 주의사항, 불편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때에 따라서 일방적인 치료방법이 아닌 의사소통을 통해 환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치료 전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방법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예측 가능한 합병증과 위험요소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호발하는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의료인 스스로 역량강화를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교과서적인 치료법 적용이 어려운 치료에 대해 진료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호발하는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에 대한 표준 진료 지침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한 상태이며, 이는 정기적인 학술대회를 통해 의료사고 사례 공유 및 예방대책 논의로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치과 임상영역에서 일어나는 의료사고에 대해 조정중재원 개원 전·후의 판결문 분석을 통한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건수와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자료 취득이 한정되어 있어 판결문 분석만으로는 전체적인 치과 임상영역의 의료분쟁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본 연구 또한 단편적인 분석만 가능한 상태이나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향후 공공기관의 자료 취득이 쉬워지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판례분석이 꾸준히 연구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단편적인 분석의 보완할 점은 추후 공공기관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을 높여, 의료소송과 한국소비자원, 조정중재원의 모든 자료를 분석한다면 중·장기적인 치과 의료분쟁 예방책과 대책마련을 연구하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조정중재원 설립 전·후 치과 민사소송의 달라진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치과사고 및 분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6년 치과 민사소송 판결문을 수집하여 사건발생일 기준으로 조정중재원 설립 전·후 4년 간(2008.4.8. ~ 2012.4.7. 과 2012.4.8. ~ 2016.4.7. )의 판결문을 재분류하여 제 1심 기준으로 총 117건의 판결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 하였다.

1.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발생 건수는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감소 추세로 분석되었다.
2.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해결기간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 1,383일(약 3.8년) 소요되었으며,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 915일(약 2.5년) 소요되었다.
3. 치과 임상영역 과목별 분포현황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구강악안면외과 65건(69.15%)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구강악안면외과 9건(39.13%) 등으로 두 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 < .001$ ).
4.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최종심 결과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환자 승소 57건(60.6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환자 기각 15건(65.22%) 으로 분석되었다. 조정중재원 이후 최종심 결과 환자 기각 판례가 증가하고 있다.
5.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의사패소 주안점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주의의무 위반 25건(43.86%),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설명·주의의무 위반 4건(50.0%) 으로 두기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geq .05$ ).
6.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주의의무 위반 요인은 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모두 시술 및 수술 전 치료수립 미흡으로 각 각 14건(32.56%), 8건(18.60%) 등으로 분석되었다.
7.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설명의무 위반 요인은 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모두

후유증 및 합병증 설명 미흡으로 각 각 20건(80.0%), 4건(80.0%) 등으로 분석되었다.

8. 치과 임상영역 의료사고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는 조정중재원 개원 전·후 모두 장애 등에서 각 각 40건(70.18%), 4건(50.0%) 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9. 치과 임상영역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값 52,471,418 원,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값 31,944,964원으로 분석되었다.

10. 치과 임상영역 손해배상 결정금액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표준편차 54,582,739원,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표준편차 8,467,203원으로 두 기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 \geq .05$ ).

11. 치과 임상영역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은 조정중재원 개원 이전 평균값 5,000,000원, 조정중재원 개원 이후 평균값 10,000,000원으로 분석되었다.

추후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 호발하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예방과 재발방지를 통한 대책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판결 결과에 따른 의료인의 의무와 의료과실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아울러 치과의사들도 의사윤리, 법률·의료분쟁에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권병기, 안형준, 강진규, 김종열, 최종훈.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 대한구강내과학회지 2006; 31(4): 283-296.

김광우. 진료의 입장에서 본 병원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대한병원협회지 1984; 13(1): 36-41

신현호. 최근 의료민사소송의 현황과 절차적 제문제. 한국의료법학회지 2010; 18(2): 7-42

이경석, 손명세. 소아청소년 대상 의료과오소송의 청구 이유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법 학회지 2011; 19(1): 85-110.

김선중. 의료과오소송법. 박영사; 2008. 쪽 20-28.

김선중.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 육법사; 2014. 쪽 57-64, 113-279.

김장한, 이윤성. 의료와 법. Epublic; 2008. 쪽 89-92.

김재윤. 의료분쟁과 법. 율곡출판사; 2015. 쪽 1-23.

김진. 판례로 살펴본 치과의료과오. 대한 나라 출판사; 2014.

대한의사협회. 의료법원론. 법문사; 2008. 쪽 339-347.

신현호, 백경희. 의료분쟁 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2011. 쪽 47-59.

이상돈, 김나경. 의료법 강의. 법문사; 2009. 쪽 124.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치과 진료위험도 조사연구. 대한치과의사협회  
2007.

추호경. 의료과오론. 육법사; 1992. 쪽 15-16.

권병기.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된 의료분쟁의 판례분석[박사학위 논문]. 서울: 연  
세대학교 대학원; 2006.

류수생. 의료분쟁 조정사례 및 개선[박사학위 논문]. 서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5.

백경희.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서울: 고  
려대학교 대학원; 2009.

석희태. 의료과오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  
원; 1988.

신은하. 의료분쟁 발생 현황 및 진료과목별 분쟁 특성 분석[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8.

임미영.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과실판단기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논문]. 서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이동엽. 소아청소년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의료사고 원인과악과 재발방지 대책[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4.

조정은. 치과임상영역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의 분석[석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치위학 대학원; 2013.

조단비.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산과 의료사고 현황과악 및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찰[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4.

최윤애.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2.

채대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석사학위 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 방문열람 제도란? Available from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trialeodes/overview/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제도란? Available from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trialrecord\\_offer/overview/index.html](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trialrecord_offer/overview/index.html)

대한민국 법원.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Available from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guide/index.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D%98%EB%A3%8C%EC%82%AC%EA%B3%A0%20%ED%94%BC%ED%95%B4%EA%B5%AC%EC%A0%9C%20%EB%B0%8F%20%EC%9D%98%EB%A3%8C%EB%B6%84%EC%9F%81%20%EC%A1%B0%EC%A0%95%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undefined>

대한치과의사협회 <http://www.kda.or.kr/kda/index.kda>

보건의료신문 <http://www.dailymedi.com/>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Research-Forum-View?serial=1287>

의료법률정보 <http://www.medcon.co.kr/>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brd/m\\_51/list.do](http://www.kca.go.kr/brd/m_51/list.do)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http://www.k-medi.or.kr/lay1/S1T130C154/contents.do>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OTITLE&parmTabId=M\\_01\\_02#SubCont](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OTITLE&parmTabId=M_01_02#SubCont)





## 부 록

[부록 1] 치과 임상 영역 의료소송 사건 번호 및 판결문

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진료과목	의료사고	소송 내용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4934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상악동 누공으로 급성굴염생김
2.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7721	교정과	교정치료	턱관절 비대칭현상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8090	구강외과	발치	혀 감각이상
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15800 2011나36199	구강외과	발치	감각이상
5.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38846 2014나5114	보철과	임플란트 보철	전치부 개방교합, 우측 구치부 조기접촉
6.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2010가소178135 2011나7060	치주과	치아탈구	치주염 치료 태만으로 인한 치아탈구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20555 2011나5261	보철과	임플란트 보철	임플란트 보철 잘못으로 지대치 틀어짐
8.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71390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임플란트 수술이후 심한 두통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49464	보존과	인레이, 레진충전	저작시통증, 치아 자발통 호소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2010가합44946 2011나24236	구강외과	봉와직염	감염으로 인한 기도 막혀 질식사 사망

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진료과목	의료사고	소송 내용
11.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7109	구강외과	발치	얼굴 붓고, 우측 눈 움직이지않음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7151	구강외과	발치	혀감각이상, 잇몸 찢어짐
13.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대법원	2010가단36505 2011나4216 2013다24542	보철과	치아삭제	과도한 치아삭제로 부정교합, 악관절발생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188	보철과	보철물 제거	보철제거시 과도한 힘에의해 post 파절
15.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대법원 전주지방법원	2012가단19507 2013나7960 2014따10113 2016나2911	구강외과	발치	감각이상, 통증장애
16.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18344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감각이상
17.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법원	2010가단4520 2011나3139 2012다14227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골소실로 임플란트 깊게 심어 치은높이 낮아짐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55892	보존과	신경치료	감각이상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101121	교정과	교정체크	재 교정치료 요구, 진료거부함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9172	구강외과	발치	설신경 지각저하

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진료과목	의료사고	소송 내용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1766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수술후통증, 골다공증약 복용으로 골괴사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17110	보존과	신경치료	통증 및 시린증상, 치아 부교합
23.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9410	구강외과	주걱턱교정술	연하곤란
24.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36951 2012나9711	보철과	치아삭제와 발치	발치치아 잔존치근으로 급성치주염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27483	구강외과	발치	설신경 마비
26.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0147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임플란트 식립 도중 악성 흑색종 발견
27.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345101 2012나3415	보철과	post	치근 드릴링 과정 중 치근 파절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2010가소7389 2010나23552 2010다108005	구강외과	발치	잔존치근으로 타치과에서 보철치료 시행 못함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대구지방법원 대법원	2011가소3333 2012나6989 2012다92357	보존과	신경치료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 흑색으로 변함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200911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감각이상

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진료과목	의료사고	소송 내용
31.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719	구강외과	발치	설신경 감각없음
32.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99143 2013나2152	보철과	보철물 치료	보철물로 인한 잇몸 통증 호소
3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242 2015나303148	구강외과	발치	혀 감각이상
34.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1569	보존과	치경부레진	부실 치료로 삼차신경통 호소
35.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9201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임플란트 재 식립후에도 계속 실패
3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단3648	구강외과	편평세포상피암	사망
37.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20132 2012나6059	구강외과	발치	우측 윗입술, 코옆부분 감각상실
38.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48733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감각이상
39.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02341 2013나50571	구강외과	발치	발치 후 봉합으로 인해 염증배출 안됨
4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2014가합589263 2015나2051515	보존과	치경부 우식진단	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다발성 우식증

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진료과목	의료사고	소송 내용
41.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7606	구강외과	발치	삼차신경통 발생
42.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41617 2014나3320	보철과	브릿지 교합조정	의료인이 아닌 기공사가 함, 치아손상
4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32158	교정과	교정치료	결찰사 제거시 치아파절, 치위생사가 함
4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34812	보철과	보철물 제거	보철물 제거 중 치아 부러짐
45.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62427	구강외과	골 채취	신경손상
46.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98382	보철과	임플란트 보철	치아조기접촉, 3급 부정교합
47.	창원지방법원	2013가단80798	임플란트	임플란트 마취	하치조 신경손상으로 감각저하
4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2011가단428735 2013나14261 2013다72596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클렙시엘라 균 감염
49.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01399 2014나40557	구강외과	이부성형술	입술장애
5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5862	구강외과	삼차신경통	악성흑색종 악화 시킨 과실

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진료과목	의료사고	소송 내용
51.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5321	구강외과	절개와 배농	제대로 치료하지않아 뇌기능 저하
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735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클렙시엘라 균 감염으로 패혈증
53.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44895	구강외과	양악수술	안면 감각기능저하, 저작기능저하
5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2012가합107117 2014나2024790	구강외과	양악수술	안면 비대칭, 턱관절 장애
55.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30390 2013나26365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안면마비 증상
5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1656	임플란트	임플란트 골이식	상악동 염
5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4149	교정과	재 교정 치료	시린이, 통증, 부종, 출혈
5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4132	교정과	급속 교정	감각저하
5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24267	보철과	보철물	치아를 많이 갈아서 약하게 함
6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33424 2013나729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감각저하, 통증

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진료과목	의료사고	소송 내용
6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206501 2013나55620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임플란트 주위염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6951	구강외과	양측악관절성형술	수술중 기구 떨어져 뇌손상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9154	보존과	인레이	치료중 발견된 하악골 골육종 진단지연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1226	구강외과	안면골 윤곽수술	턱관절 통증호소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0574	구강외과	양악수술	골격성 3급 부정교합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7515	구강외과	양악,광대축소술	개구장애, 관절잡음, 감각저하, 통증
6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0926	보철과	임플란트 보철	교합 맞추지 못해 단기간내 파절, 상실
68.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1953	구강외과	양악수술	감각저하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0806	구강외과	양악수술	감각저하로 저작기능 불편
70.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5485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입술마비, 통증

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진료과목	의료사고	소송 내용
7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당진시법원 대전지방법원	2012가소7950 2013나5396	보철과	임플란트 보철	보철크기로 의견 맞지않아 치료중단
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02489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하순 및 이부 지각이상
73.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60380	구강외과	발치	신경손상, 지각이상
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28199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입술 감각둔한 증상
75.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대법원	2012가단59736 2014나53054 2014다232814	임플란트	임플란트 골이식	상악동 염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4158	구강외과	양악수술	안면비대칭, 광대뼈 부위 함몰
77.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법원	2013가단11086 2014나15758 2015다43110	보철과	임플란트 보철	보철 높낮이 맞지않아 불편감 호소
7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1564	구강외과	악교정 수술	감각기능 저하, 발음, 안면비대칭
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9991	구강외과	양악, 이부성형술	측두부함몰, 하악 비대칭, 개구장애
80.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50608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임플란트 실패



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진료과목	의료사고	소송 내용
81.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7127	구강외과	발치	발치 중 일부치아 기도로 넘어가 사망
8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11452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잇몸 염증, 출혈, 통증, 교합 맞지않음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0537	구강외과	양악턱 교정	하치조신경손상, 발음 부정확
84.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22076 2015나16603	보철과	보철치료	교합장애로 치근 파절, 보철물 파절
8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0676	구강외과	절개와 배농	기관절개술 시행지체로 저산소성 뇌손상
8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9078	구강외과	양악수술	감각이상, 부정교합, 골괴사
8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570	구강외과	양악수술	안면신경손상, 감각저하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869	구강외과	사각턱 교정술	골흡수, 하치조신경손상, 안면비대칭
8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단6642	임플란트	임플란트 골채취	하치조신경손상, 감각상실
9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9188	구강외과	절개와 배농	농양흡입되지 않아 기도로 염증-뇌손상

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진료과목	의료사고	소송 내용
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1994	구강외과	골 절단술	좌측 눈 감기지 않고 눈물나는 증상
92.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123288	보존과	레진수복	교합조정으로 턱관절 장애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54342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하치조신경 지각마비 및 감각이상
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16240	구강외과	양악수술	안면비대칭, 개구장애, 턱관절 잡음
95.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6031 2014나6367	치주과	스켈링	소독하지 않은 기구사용으로 잇몸감염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29717	보철과	보철물 제거	혀 좌측 측면 상해
97.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91548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감각이상 호소
98.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83080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두통, 안면부 통증, 감각이상
9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가단52273	보존과	신경치료	파일부러져 통증 호소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703571 2014나29802	치주과	잇몸치료	잇몸치료중 임플란트 제거된

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진료과목	의료사고	소송 내용
1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98824	소아치과	충치치료	과다 마취로 인해 심정지로 사망
10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13521	임플란트	자가골 이식	자가골 이식후 감염
103.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4273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감각이상 호소
1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26038	보존과	마취	마취제 부작용으로 실신
1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00814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하순 및 이부 감각이상
106.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2013가합71026 2014나2015420	보존과	마취	마취 후 안면부 경련 및 청색변화로 사망
107.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02133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감각저하, 감각이상
108.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대법원	2013가소145282 2014나11437 2016다203308	보철과	보철물 치료	보철물 임시접착으로 염증생김
109.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40694 2014나979 2014다38456 2015재나59 2015재나288	치주과	치주진단	치주 진단 후 치주 상태 악화
1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4059	보철과	틀니치료	틀니 좌우 수평 맞지않음, 계속 통증

번호	법원명	사건번호	진료과목	의료사고	소송 내용
111.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8018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수술위한 아스피린중단으로 급성심정지
112.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수원지방법원	2014가소15796 2015나2109	보철과	자석 틀니치료	자석 틀니로 인한 지대치 통증
1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9869	임플란트	임플란트 식립	불필요한 치료
1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43908	보철과	보철물 치료	교합 맞지않음, 통증
115.	대구지방법원 칠곡군법원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1886 2015나487	보존과	신경치료	파일 부러짐
1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0257	보철과	보철 재부착	타치과 임플란트보철 재부착- 스크류파절
1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54862	구강외과	발치	발치 기구 부러져 잇몸에 기구 파편 남음

[부록 2] 지역별 치과 의료기관 현황과 치과 의료소송 판결문 1심 기준 총 비율

법원명	치과의료기관현황	~2012.04.07.판결문(%)	~2016.04.07.판결문(%)	총 합계
서울중앙지법	1677곳	34건 (2.03%)	8건 (0.48%)	42건 (2.50%)
서울서부지법	588곳	4건 (0.68%)	1건 (0.17%)	5건 (0.85%)
서울남부지법	875곳	6건 (0.69%)	0	6건 (0.69%)
서울북부지법	832곳	5건 (0.60%)	1건 (0.12%)	6건 (0.72%)
서울동부지법	828곳	3건 (0.36%)	1건 (0.12%)	4건 (0.48%)
부산지방법원	1246곳	5건 (0.40%)	4건 (0.32%)	9건 (0.72%)
대구지방법원	865곳	6건 (0.69%)	1건 (0.12%)	7건 (0.81%)
수원지방법원	404곳	6건 (1.49%)	1건 (0.25%)	7건 (1.73%)
전주지방법원	248곳	4건 (1.61%)	1건 (0.40%)	5건 (2.02%)
울산지방법원	375곳	6건 (1.6%)	2건 (0.53%)	8건 (1.33%)
대전지방법원	517곳	5건 (0.97%)	1건 (0.19%)	6건 (1.16%)
광주지방법원	593곳	1건 (0.17%)	1건 (0.17%)	2건 (0.34%)
청주지방법원	231곳	2건 (0.87%)	0	2건 (0.87%)
창원지방법원	311곳	2건 (0.64%)	0	2건 (0.64%)
춘천지방법원	76곳	1건 (1.32%)	0	1건 (1.32%)
인천지방법원	852곳	4건 (0.47%)	0	4건 (0.47%)
의정부지방법원	131곳	0	1건 (0.76%)	1건 (0.76%)
합계		94건 (14.59%)	23건 (3.63%)	117건 (17.41%)

[부록 3] 치과 임상영역 주요 과목별 의료사고 빈도 분석 결과

<표 부록 3-1> 치과 임상영역 구강악안면외과 주요 의료사고

의료사고 원인	2008.4.8. ~ 2012.4.7		2012.4.8. ~ 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발치	15	23.08%	1	11.11%
임플란트	23	35.38%	8	88.89%
절개와 배농	4	6.15%	0	0
골 채취	1	1.54%	0	0
편평세포상피암수술	1	1.54%	0	0
삼차신경술	1	1.54%	0	0
양악수술	18	27.69%	0	0
악교정술	1	1.54%	0	0
골 절단술	1	1.54%	0	0
합계	65	100%	9	100%

<표 부록 3-2> 치과 임상영역 치과보존과 주요 의료사고

의료사고 원인	2008.4.8. ~ 2012.4.7		2012.4.8. ~ 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신경치료	3	37.5%	2	50.0%
충전	4	50.0%	0	0
진단	1	12.5%	0	0
마취	0	0	2	50.0%

합계	8	100%	4	100.0%
----	---	------	---	--------

<표 부록 3-3> 치과 임상영역 치주과 주요 의료사고

의료사고 원인	2008.4.8. ~ 2012.4.7		2012.4.8. ~ 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진단 중 치아 탈구	1	100%	0	0
치료중임플란트탈락	0	0	1	33.33%
진단	0	0	1	33.33%
스켈링	0	0	1	33.33%
합계	1	100%	3	99.99%(±0.01)

<표 부록 3-4> 치과 임상영역 치과보철과 주요 의료사고

의료사고 원인	2008.4.8. ~ 2012.4.7		2012.4.8. ~ 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치아삭제	3	20.0%	0	0
보철물 제거	2	13.33%	1	16.67%
교합조정	2	13.33%	0	0
임플란트 보철	6	40.0%	1	16.67%
포스트	1	6.67%	0	0
보철물(Crown)	1	6.67%	2	33.33%
틀니	0	0	2	33.33%

합계	15	100%	6	100%
----	----	------	---	------

<표 부록 3-5> 치과 임상영역 치과교정과 주요 의료사고

의료사고 원인	2008.4.8. ~ 2012.4.7		2012.4.8. ~ 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교정 치료	4	80.0%	0	0
교정 체크	1	20.0%	0	0
합계	5	100%	0	0

<표 부록 3-6> 치과 임상영역 소아치과 주요 의료사고

의료사고 원인	2008.4.8. ~ 2012.4.7		2012.4.8. ~ 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마취	0	0	1	100%
합계	0	0	1	100%



[부록 4]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진료과목별 최종심 빈도 분석 결과

<표 부록 4-1> 구강악안면외과 의료소송 최종심 빈도 분석

구분	2008.4.8. ~ 2012.4.7		2012.4.8. ~ 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1심 종결	50	76.92%	9	100%
2심 종결	10	15.39%	0	0
3심 종결	4	6.15%	0	0
그 외	1	1.54%	0	0
합계	65	100%	9	100%

<표 부록 4-2> 치과보존과 의료소송 최종심 빈도 분석

구분	2008.4.8. ~ 2012.4.7		2012.4.8. ~ 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1심 종결	6	75.0%	2	50.0%
2심 종결	1	12.5%	2	50.0%
3심 종결	1	12.5%	0	0
그 외	0	0	0	0
합계	8	100%	4	100%

<표 부록 4-3> 치주과 의료소송 최종심 빈도 분석

구분	2008.4.8. ~ 2012.4.7		2012.4.8. ~ 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1심 종결	0	0	0	0
2심 종결	1	100%	2	66.67%
3심 종결	0	0	0	0
그 외	0	0	1	33.33%

합계	1	100%	3	100%
----	---	------	---	------

<표 부록 4-5> 치과보철과 의료소송 최종심 빈도 분석

구분	2008.4.8. ~ 2012.4.7		2012.4.8. ~ 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1심 종결	5	33.33%	4	66.66%
2심 종결	8	53.33%	1	16.67%
3심 종결	2	13.33%	1	16.67%
그 외	0	0	0	0
합계	15	99.99% (±0.01)	6	100%

[부록 5]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결과 빈도 분석

<표 부록 5-1> 심급별 의료소송 결과 빈도 분석

심급	2008.4.8~2012.4.7				2012.4.8~2016.4.7			
	승소	백분율(%)	기각	백분율(%)	승소	백분율(%)	기각	백분율(%)
1심	46	80.70%	20	54.05%	8	100%	8	53.33%
2심	10	17.54%	10	27.03%	0	0	5	33.33%
3심	1	1.76%	6	16.22%	0	0	1	6.67%
그외	0	0	1	2.70%	0	0	1	6.67%
합계	57	100%	37	100%	8	100%	15	100%

<표 부록 5-2> 과목별 의료소송 결과 빈도 분석

진료과목	2008.4.8~2012.4.7				2012.4.8~2016.4.7			
	승소	백분율	기각	백분율	승소	백분율	기각	백분율
구강악안면 외과	46	80.70%	19	51.35%	6	75.0%	3	20.0%
치과보철과	8	14.04%	7	18.92%	1	12.5%	5	33.33%
치과보존과	2	3.51%	6	16.22%	1	12.5%	3	20.0%
치과교정과	1	1.75%	4	10.81%	0	0	0	0
치주과	0	0	1	2.70%	0	0	3	20.0%
소아과	0	0	0	0	0	0	1	6.67%
합계	57	100%	37	100%	8	100%	15	100%

[부록 6]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손해배상 금액

<표 부록 6-1>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환자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금액

금액	2008.4.8~2012.4.7		2012.4.8~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0 ~ 500만원	0	0	0	0
500만원 ~ 1,000만원	2	3.51%	1	12.5%
1,000만원 ~ 3,000만원	10	17.54%	2	25%
3,000만원 ~ 5,000만원	15	26.32%	3	37.5%
5,000만원 ~ 10,000만원	16	28.07%	2	25%
10,000만원 이상	14	24.56%	0	0
합계	57	100%	8	100%

<표 부록 6-2>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환자 승소에 따른 결정 금액

금액	2008.4.8~2012.4.7		2012.4.8~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0 ~ 500만원	8	14.04%	2	25%
500만원 ~ 1,000만원	12	21.05%	1	12.5%
1,000만원 ~ 3,000만원	19	33.33%	5	62.5%
3,000만원 ~ 5,000만원	10	17.55%	0	0

5.000만원 ~ 10.000만원	5	8.77%	0	0
10.000만원 이상	3	5.26%	0	0
합계	57	100%	8	100%

<표 부록 6-3> 치과 임상영역 의료소송 환자 승소에 따른 위자료 금액

금액	2008.4.8~2012.4.7		2012.4.8~2016.4.7	
	판결문	백분율(%)	판결문	백분율(%)
0 ~ 100만원	4	7.41%	0	0
100만원 ~ 300만원	9	16.67%	2	28.57%
300만원 ~ 500만원	17	31.48%	0	0
500만원 ~ 1.000만원	15	27.78%	5	71.43%
1.000만원 ~ 3.000만원	7	12.96%	0	0
3.000만원 ~ 5.000만원	1	1.85%	0	0
5.000만원 이상	1	1.85%	0	0
합계	54	100%	7	100%